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기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972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강화 등(최기상의원안)	3

I. 개요

1. 최기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97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기상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10. 28.

(3) 회 부 일 : 2024. 10.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해당 기업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도입된 세제 혜택임.

이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여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으로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독일은 기업의 전체 자산 중 비사업용자산이 50%를 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사업용자산 비율에 대한 규율이 미비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으며, 2023년 개정 세법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본질적 부분인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 요건이 완화된 것에 대해 우려가 큼.

이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해 비사업용자산이 50%가 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 요건을

2023년에 개정되기 전의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세수 증가와 함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강화 등(최기상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 ○ 대상 -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 <u><단서신설></u> ○ 사후관리 -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후관리요건 위반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부과 · 가업용 자산 40% 이상 유지 ·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 · 주식등 상속 시 지분 유지 · <u>5년간</u> 정규직 근로자수 또는 급여액의 평균을 상속 개시 직전 2년 대비 <u>90% 이상 유지</u> <u><신 설></u>	☐ 사후관리 의무 ○ 대상 -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 다만,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가업의 비사업용 재산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사후관리 · <u>7년간</u> 정규직 근로자수 또는 급여액 평균을 상속 개시 직전 2년 <u>수준 이상 유지</u> · 매년 정규직근로자수 또는 총 급여액의 평균을 종전 2년 대비 80% 유지

* 최기상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2)

☐ 개정안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비사업용 재산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유지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고용유지 요건은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 직전 2년 평균의 90%이상을 유지하면 충족되나,

개정안은 ①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 직전 2년간 평균의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에 더하여 ② 매 연도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이 상속개시 직전 2년 평균의 80%이상 유지하도록 연도별 고용유지 요건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과 개정안의 고용유지 요건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전체기간 고용유지 요건	5년간 평균으로 기준고용인원의 90%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90% 유지	7년간 평균으로 기준고용인원의 100%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100% 유지
연도별 고용유지 요건	-	각 사업연도 기준고용인원의 80%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80% 유지

* 기준고용인원: 상속개시 전 2개 사업연도 평균 정규직 근로자 고용인원

기준총급여액: 상속개시 전 2개 사업연도 총급여액의 평균

□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장기간 축적된 기술·경영 노하우의 안정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공제한도 범위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업상속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가업상속공제 취지의 달성을 위해 현행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자산·지분·고용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¹⁾를 부여하고 위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시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사후관리 의무로 ①(자산유지)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이 금지되고, ②(지분유지)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③(고용유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 또는 총급여액의 평균이 직전 2개 연도의 9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④(가업종사)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계속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해당 기업의 고용 유지를 주요목적 중 하나로 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해당 기업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도입된 세제 혜택임에도 2022년 말 법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본질적 부분인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 요건이 완화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²⁾.

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2) 개정안의 제안이유 참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및 고용유지요건은 2019년 이후 완화되어 왔는데, 개정안은 2023년 개정 이전 수준으로 고용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 연혁]

구 분	2014 ~ 2019	2020	2023 ~
사후관리기간	10년	7년	5년
가업용 자산	가업용 자산 20%(5년내 10%) 처분 금지		가업용 자산 40% 처분 금지
연도별 고용유지 요건	각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직전 2년 평균의 80% 유지 의무	각 사업연도 기준고용인원(상속개시 전 2개 사업연도 평균 고용인원)의 80% 유지 또는 기준총급여액(상속개시 전 2개 사업연도 총급여액의 평균)의 80% 유지	삭제
전체기간 고용유지 요건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100% (중견기업 120%) 유지 의무	7년간 평균으로 기준고용인원의 100% 유지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100% 유지	5년간 평균으로 기준고용인원의 90% 유지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90% 유지

□ 다만, 이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고용유지 요건의 강화가 피상속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가업상속 동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161